

부속서 I

관세 양허표

베트남

두주

1. 이 양허표는 아세안 회원국, 호주, 중국, 일본, 한국 그리고 뉴질랜드에 대하여 각각 적용 가능한 6개 절로 구성된다.
2. 이 양허표의 규정은 일반적으로 베트남 수출입품목분류표(Export and Import Classification Nomenclature) (이하 이 양허표에서 “EICN”이라 한다)식으로 표현된다. 이 양허표 소호의 품목 적용범위를 포함하여, 이 양허표의 규정에 대한 해석은 EICN의 일반 주해, 부 주해 및 류 주해에 의하여 규율된다. 이 양허표의 규정이 이에 상응하는 EICN 규정과 일치하는 한도에서, 이 양허표의 규정은 이에 상응하는 EICN 규정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.
3. 이 양허표의 각 관세 인하 단계에 “CKD”로 표시된 세번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.
4. 이 양허표의 각 관세 인하 단계에 “TRQ”로 표시된 세번은 1994년도 GATT에 따른 관세 할당과 관련된 베트남의 세계무역기구 약속에 따른다.
5. 이 양허표의 각 인하 단계에 “U”로 표시된 세번은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모든 약속으로부터 제외된다.
6.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, 이 양허표의 각 인하 단계에 표시된 관세율은 퍼센트 (%)로 표현된다.